의료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영교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603

발의연월일: 2024. 7. 10.

발 의 자:서영교・박지원・이용우

박홍배 • 박홍근 • 이정헌

강유정 • 박희승 • 한정애

김성회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인구 고령화로 인한 만성질환자와 장기입원환자 증가로 간병 서비스 수요가 급증하고 있으며, 간병 비용 또한 간병 서비스 수요 증가와함께 상승하여 하루 평균 약 13만원에서 15만원에 달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에는 의료급여 범위에 간병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 생활이 어려운 환자가 간병이 필요한 경우 막대한 비용을 부담하기가 어렵고 환자 가족이 직접 간병을 하는 경우 가정의 생계유지가 위협을 받게 되는 실정임.

이에 의료급여의 내용에 간병을 추가하고 수급권자 중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간병의 급여비용 본인부담을 면제할 수 있는 특례를 규정하여, 생활이 어려운 사람의 의료비 부담을 경감하고 사회복지 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7조제1항제8호 및 제10조의2 신설 등).

법률 제 호

의료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료급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간병

제10조 중 "비용"을 "비용(이하 "본인부담금"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1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조의2(간병에 관한 특례) 제10조에도 불구하고 수급권자 중 중앙의료급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제7조제1항제8호에 따른 간병의 급여비용총액 중 본인부담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7조(의료급여의 내용 등) ① 이	제7조(의료급여의 내용 등) ① -
법에 따른 수급권자의 질병ㆍ	
부상·출산 등에 대한 의료급	
여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	
다.	
1. ~ 7. (생 략)	1. ~ 7. (현행과 같음)
<u><신 설></u>	<u>8. 간병</u>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제10조(급여비용의 부담) 급여비	제10조(급여비용의 부담)
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	
에 따라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제25조에 따른 의료급여기금에	
서 부담하되, 의료급여기금에서	
일부를 부담하는 경우 그 나머	
지 <u>비용</u> 은 본인이 부담한다.	<u>비용(이하 "본인부담금"이라</u>
	<u>한다)</u>
<u><신 설></u>	제10조의2(간병에 관한 특례) 제1
	0조에도 불구하고 수급권자 중
	중앙의료급여심의위원회의 심
	의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하
	는 사람에 대해서는 제7조제1
	항제8호에 따른 간병의 급여비
	용총액 중 본인부담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